

# COVID-19 산업별 지침: 호텔, 숙박 및 단기 임대

2020년 10월 20일

이 지침은 주 전역에 걸친 부문 및 활동 개방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컬 보건 담당자는 로컬 전염병학적 상황에 맞춘 보다 엄격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관련 로컬 개점 정책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레스토랑,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 대기령이 수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직원(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및 고객의 얼굴 가리개(마스크)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목적

이 문서는 직원과 고객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원을 위해 호텔과 숙박 및 단기 임대 업체(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업체는 사업체가 속한 카운티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자주색 - 광범위함 - 1등급:** 숙박업소 운영이 허용됩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야외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야외 온수 욕조는 가정 단위 내지는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열 수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 온수 욕조, 사우나, 증기탕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합니다. 숙박업소 운영은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빨간색 - 상당함 - 2등급:** 숙박업소 운영이 허용됩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실내에서 10%의 수용 인원으로 개방됩니다. 실내 수영장, 온수 욕조, 사우나, 증기탕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합니다. 숙박업소 운영자는 본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주황색 - 중등도 - 3등급:** 숙박업소 운영이 허용됩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실내에서 25%의 수용 인원으로 개방됩니다. 실내 수영장은 비가정 그룹을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개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에는 실내 워터 파크나 워터 라이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내 온수 욕조, 사우나, 증기탕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합니다. 숙박업소 운영자는 본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노란색 - 최소 - 4등급:** 숙박업소 운영이 허용됩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실내에서 50%의 수용 인원으로 개방됩니다. 실내 수영장, 온수 욕조, 사우나, 증기탕은 개방할 수 있지만, 비가정 단체의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수영장에는 실내 워터 파크나 워터 라이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소 운영자는 본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 등급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Blueprint for a Safer Economy\(더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보건부가 보다 엄격한 기준 및 다른 폐쇄 조치를 시행 중일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현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숙박업소 운영자는 [위험 감소를 위한 업계 지침](#) 웹사이트의 기타 지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측면과 서비스 오퍼링이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 지침을 검토하여 운영의 모든 측면에 적절한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레스토랑, 식사 및 음식 서비스(레스토랑 지침)
- 바(바, 브루어리 및 디스틸러리 지침)
-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및 운동 지침(피트니스 시설 지침 참조)
- 기념품점 및 소매점 운영(소매점 지침)
- 미니어처 골프 및 아케이드를 포함한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지침)
- 보육(보육 지침)
- 트램, 셔틀 및 기타 환승(공공 및 개인 여객기, 환승 및 시외 여객 철도 지침)
  - 장애인에 대한 의무사항에 따라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셔틀 서비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 지상, 건물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제한된 서비스 지침)

대규모 회의 장소, 연회홀 또는 컨벤션 센터를 갖춘 호텔, 숙박 및 단기 임대 업장은 개편된 방식의 또는 완전한 방식의 운영이 허용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자, 공동 사용 운영자 및 기타 임대 유닛 소유자 및 운영자는 **비점유된 유닛만 대여해야 하며,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점유된 거주지 내에 객실 또는 공간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동안 대여되거나 별도의 외부 출입구가 있어서 공유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점유되지 않은 주택이나 유닛은 비점유된 유닛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개편된 또는 완전한 운영으로 다시 열 수 있는 경우, 운영자는 [Blueprint for a Safer Economy\(더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를 참조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 규범적 권리 및 단체 교섭으로 얻어낸 권리를 박탈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캘리포니아/OSHA의 모든 기존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sup>1</sup>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 및 주/현지 명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OSHA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웹 페이지에 게시한 직원 보호를 위한 준수 요건에 대한 캘리포니아/OSHA 지침](#)에서 안전 및 보건 관련 지침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사업체 및 고용주들](#)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이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PH 안면 가리개 지침](#)은 COVID-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CDPH 웹사이트에서 수정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시설마다 업무 공간별로 COVID-19 예방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업무 공간 및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각 시설마다 해당 계획을 시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 [CDPH 안전 가리개 관련 지침](#)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이나 손님에게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보건부의 연락처를 알아 두십시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업무 공간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결함이 확인된 부분을 기록하고 개선합니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CDPH 지침](#) 및 지역 보건부의 지시 또는 안내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근로자의 밀접 접촉자(15분 이상 동안 6피트 이내)를 식별한 후 COVID-19 양성 근로자와 밀접 접촉자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 COVID-19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모든 직원 및 하도급 계약 직원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역 보건부에 직장 내 발생을 보고합니다. [AB 685](#)(제84장, 2020년 법령)에 따른 고용주 책임에 대한 추가 정보는 Cal/OSHA의 [강화된 집행 및 고용주 보고 요건](#) 및 CDPH의 [AB 685에 대한 고용주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COVID-19](#)에 대한 정보,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중증 질병이나 사망의 [위험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
- [CDC 지침](#)에 따라 체온 또는 증상 확인 등 자택 내 자가 선별 검사 방법.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증상 발현, 인후통, 코막힘이나 콧물, 구역질, 구토 또는 설사와 같이 [CDC가 언급한](#) COVID-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직원이 COVID-19 진단 후에는 [COVID-19 진단후 직장 또는 학교 복귀에 대한 CDPH 지침](#)을 충족한 후에만 직장으로 복귀.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정신혼란이나 창백한 입술 또는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메탄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는 독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와 성인 모두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근무시간 및 근무 외 시간 모두에서의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섹션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안면 가리개(마스크)의 적절한 사용:
  - 안면 가리개는 개인 보호 장비(PPE)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덮어야 합니다.
  - 직원은 안면 가리개의 사용 또는 조절 전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고 필수 용품과 PPE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 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른 근로자의 병가 권리를 포함하여, [COVID-19에 대한 병가 및 근로자 보상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근무를 시작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직원에게 체온 및/또는 증상 선별심사를 제공합니다.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택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선별 검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 경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기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CDC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직원이 눈 보호 장비 및 장갑을 비롯한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자주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증상이 있는지 스크리닝하거나 통상적인 접촉이 많은 물품을 처리하는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고객 또는 동료로부터 항상 6피트 이내에 있어야만 하는 직원은 안면 가리개 외에 2차 방벽(예: 안면 보호대 또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고객과 6피트 이내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하우스키핑은 고객이 객실에 없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시 고객의 개인 소지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우스키퍼를 교육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창문을 열어 공기 순환이 잘 되게 하도록 하우스키퍼를 교육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고객과의 접촉, 객실 청소, 우편물 개봉 또는 기타 일상 물품을 만진 후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적합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대리 주차 서비스 운전사, 수하물 처리자 및 하우스키퍼는 근무 중에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적합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수하물 전달은 고객이 객실에 없을 때 수행되어야 합니다.
- 숙박업체 운영자는 고객이 도착 전에 해당 시설의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는 숙박업체 운영자가 증상이 있는 방문자가 포함된 그룹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새로운 체크인 절차,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 및 숙박 시설, 편의시설 및 체크인/등록 장소와 같은 공용 구역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일정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미리 손님에게 안면 가리개를 가져오라고 상기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DPH 안면 가리개 지침](#)에 명시된 안면 가리개 착용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구내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안면 가리개 없이 도착하는 손님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고객과 방문자에게는 도착 시 체온 및/또는 선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얼굴 가리개(마스크) 없이 도착한 고객에게는 가리개(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숙박업체 운영자는 증상이 있는 고객이 있는 개인/단체의 예약을 취소하고 입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적절한 얼굴 가리개(마스크) 사용법과 해당 건물 전체에 걸쳐 적용 중인 현 시점의 물리적 거리두기 실행 방안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지판이 눈에 띄도록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환기,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

- 가능하면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의 설치와 가능한 최고 효율 제품으로의 빌딩 공기 필터 업그레이드 및 사무실, 객실 및 기타 실내 공간에 외부 공기의 양을 늘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 현장의 음식점에서는 보안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창문 또는 문을 열어서 공기가 더 잘 순환되게 해야 합니다.
- 실내 환경에서 공기를 통한 질병 전염에 대한 실내 공기질 및 환기 지침의 최신 정보는 [CDPH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호텔 로비, 프런트 데스크 체크인 카운터, 벨 데스크, 휴식 공간 및 식사 구역, 탈의실, 하역장, 주방 및 계단, 계단통로, 핸드레일과 엘리베이터 계기판을 포함한 진출입구 영역과 같이 왕래가 잦은 구역에 대해 철저한 세정을 수행합니다.



- 도어 핸들, 자동판매기 및 얼음기계, 조명 스위치, 전화기, 세탁기 및 건조기 도어와 계기판, 수하물 카트, 셔틀 도어 핸들, 화장실 및 손세정 시설을 포함해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밤낮으로 소독합니다. 매일 수행하는 객실 청소 시 표면을 소독합니다. 소독 전에 더러운 물품을 먼저 청소합니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 직무의 일환으로 업무 시간 동안 할당되어야 합니다.
- 손 세정제 및 위생 물수건을 포함한 적절한 위생 제품을 워크스테이션, 데스크 및 헬프 카운터에 비치하고, 고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개인용 손 소독제를 제공합니다.
- 이러한 위생 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비누와 종이 타월,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살균용 화학 제품을 선택할 때,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록](#) 목록에 나와 있는 COVID-19 예방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릅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필히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부가 권장한 [천식 환자에게 안전한 청소 방법](#)을 따르고 적절히 환기를 합니다.
-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적절한 PPE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병원균을 공기 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스워핑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해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고효율 미립자 공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 [레이오넬라증](#) 및 물과 관련된 기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의 시설 폐쇄 후에는 모든 급수 설비 및 장치(예: 음수대, 장식용 분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가능한 경우 전화, 태블릿, 노트북, 책상, 펜, 기타 작업 용품 또는 사무실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모든 공용 도구와 장비는 각 교대 근무 도중과 교대 근무 전후 또는 해당 장비가 새로운 근로자에게 이전될 경우 항상 세정 및 소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화, 라디오, 컴퓨터 및 기타 통신 장치, 결제 단말기, 주방 도구, 엔지니어링 도구, 안전 버튼, 폴리오, 하우스킵핑 카트 및 청소 장비, 열쇠, 시간기록계 및 기타 모든 직접 접촉 품목이 포함됩니다.
- 냄비, 팬, 주방용품 등의 주방 물품은 각 투숙 사이에 세척해야 합니다. 캐비닛 내 및 다른 객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식기는 세척해야 합니다. 고객 도착 시 적절한 주방용 세제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스폰지를 제공합니다.

- 냉장고 선반, 오븐 스토브탑, 커피 메이커, 토스터, 팬트리 선반 및 기타 영역 등 모든 가전제품과 주방 영역을 적절히 세정합니다.
- 사용한 리넨은 일회용 밀봉 백에 넣어 객실에서 가져와 운반합니다. 각 고객의 투숙 종료 시 모든 타월과 리넨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을 가져와 세정해야 합니다. 운송 중 과도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물품은 객실 내에서 백에 넣어야 합니다. 모든 침대 리넨 및 세탁물은 고온에서 세탁하고 [CDC 지침](#)에 따라 세정해야 합니다.
- 가능할 경우 고객 퇴실 후 24~72시간 동안 객실을 비워둘 것을 검토합니다.
- COVID-19로 추정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 경우, 고객 객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격리되어야 합니다. 케이스가 확정되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 객실은 영업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양성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객실은 [CDC 지침](#)에 따른 강화된 소독 프로토콜을 거친 후에만 영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주요 고객 및 근로자 출입구와 진입로, 리셉션 구역, 호텔 로비, 레스토랑 입구, 회의 및 컨벤션 공간, 엘리베이터 대기 공간, 수영장, 살롱 및 헬스장 등과 같은 접촉 구역에 비접촉식 손 세정제 디스펜서를 설치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경고:** 물리적 거리두기만으로는 COVID-19 전염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고객 및 일반 대중 사이에서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파티션이나 시각적 표시(예: 근로자 및/또는 고객이 서야 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바닥 마킹이나 표식)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고객이나 근로자가 줄을 서는 모든 구역은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체크인, 체크아웃, 엘리베이터 로비, 커피숍과 식당 및 택시와 공유차량용 대기줄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 사이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위해 근로자 휴식 공간, 유니폼 관리 구역, 교육실, 공유 사무실 공간, 근로자 서비스 창(은행 창구 스타일 창) 및 기타 고밀도 영역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근무 전 회의는 가상으로 또는 근로자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구역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대규모 부서는 직원 도착 시간에 시차를 뒤 건물 뒷편 복도와 서비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며 직원 휴식 시간에 시간차를 두어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 근로자가 고객 및 타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 변경 옵션(예: 컨시어지 데스크 근무 대신 재고 관리 또는 전화상으로 관리 요구사항 처리) 요청 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벽을 사용하고,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려 직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도록 차양 커버와 좌석 배치를 사용해 야외 휴게 공간을 만드십시오. 직원들이 휴식 시간 중에 모이지 않도록 하고 안면 가리개 없이 서로 6피트 이내에서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 사무공간, 큐비클, 로비, 프런트 데스크 체크인 구역, 비즈니스 센터, 컨시어지 서비스 구역 및 기타 공간을 다시 디자인해 업무 공간과 객실 숙박 시설에 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근로자들이 화장실과 복도와 같이 왕래가 많은 구역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도보 이동 영역에 단방향의 복도와 통로를 설정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 수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직원이 물리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는 악수 및 그와 유사한 인사 방식 또는 기타 행동을 피하도록 합니다.
- 물리적인 실제 사무실에 물품 배달할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펜과 클립보드를 공유하지 말고 사용 중간에 손을 씻거나 소독합니다.
- 고객은 가능한 경우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개방된 문을 통해 또는 자주 손을 씻거나 적절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문을 통해 입장해야 합니다.
- 로비 안내자를 포함해 고객이 서로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객을 건물 외부 대기열에 세우는 피크 시간 대기 절차를 실시합니다.
-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픽업 및 전달 프로토콜을 사용해 객실 서비스, 세탁과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및 편의물품 전달을 제공합니다.



## 단기 임대 시설에 관한 추가 고려사항

- 부동산 관리자, 공동 사용 운영자 및 기타 임대 유닛 소유자 및 운영자는 비점유된 유닛만 대여해야 하며,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점유된 거주지 내에 객실 또는 공간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동안 대여되거나 별도의 외부 출입구가 있어서 공유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점유되지 않은 주택이나 유닛은 비점유된 유닛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거주자, 임차인 및 다른 가구의 손님들이 주방 가전제품, 세탁시설 등을 공유할 경우 적절한 세척 및 소독 프로토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임시 공유 거주 형태의 경우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어렵습니다.
- 시설 관리자, 공동사용 운영자 및 기타 임대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는 가능한 경우 셀프 또는 원격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물쇠 상자나 키패드가 있는 스마트 잠금장치 설치를 검토하고 적절한 셀프 체크인 지침을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 가능한 경우 표준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을 실시하고 조기 도착이나 늦은 출발을 제한함으로써 고객 투숙 사이에 실시하는 강화된 세정 프로세스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적절한 얼굴 가리개(마스크) 사용법과 해당 건물 전체에 걸쳐 적용 중인 현 시점의 물리적 거리두기 실행 방안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지판이 건물 입구와 기타 중요 위치에 눈에 띄도록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투숙 후 임대 시설을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침대 레일, 테이블, TV 리모콘, 헤드보드, 카운터탑, 주방 가전제품, 냉장고 손잡이, 스토브 손잡이, 거울 및 기타 품목 등 접촉이 잦은 모든 영역을 닦고 세정하고 소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임대 시설에서 남은 재활용, 쓰레기 및 폐품 모두를 제거합니다. 쓰레기통을 일렬로 세우면 티슈 및 기타 폐기물 처리가 쉬워집니다. 이전 고객이 냉장고, 냉동고, 팬트리에 남긴 모든 음식물을 비웁니다.
- 모든 리넨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품목까지 포함해 각 투숙 사이에 가져와 세탁해야 합니다. 임대 시설 내 침구, 타월 또는 기타 세탁 품목을 세탁할 경우, 더러운 세탁물을 취급할 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각각의 사용 후 폐기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 즉시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임대 시설에 여러분의 리넨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 더러운 세탁물을 흔들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공기를 통한 바이러스 분산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세탁물을 세탁합니다. 품목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가장 따뜻한 물 설정을 사용해 세탁물을 세탁한 후 완전히 말립니다. 표면에 관한 위의 지침에 따라 세탁물 바구니를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사용 후에 치울 수 있는 일회용 또는 개별 사용 후 세탁이 가능한 백 라이너 사용을 검토합니다.

-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모든 부드러운 표면을 적절하게 세정합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먼지와 때를 제거한 후 소재에 적합한 세정제로 세척합니다. 가능하다면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세탁기로 세척합니다.
- 냄비, 팬, 주방용품 등의 주방 물품은 각 투숙 사이에 세척해야 합니다. 캐비닛 내 및 다른 객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식기는 세척해야 합니다. 고객 도착 시 적절한 주방용 세제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스폰지를 제공합니다.
- 각 투숙 후, 냉장고 선반, 오븐 스토브탑, 커피 메이커, 토스터, 팬트리 선반 및 기타 영역 등 모든 가전제품과 주방 영역을 적절히 세정합니다.
- 가능한 경우, 병원균을 공기 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고효율 미립자 공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 화장실 변기, 샤워기, 욕조, 세면대, 캐비닛 및 선반 등은 EPA가 COVID-19에 대해 승인한 다용도 세정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거울과 유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닦아야 합니다. 욕실 바닥은 진공청소 및/또는 대걸레로 청소해야 합니다.
- 임대 시설에 추가적인 손비누, 종이 타월, 화장지, 소독 스프레이 또는 소독용 물수건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외부 또는 전문 청소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세척 및 소독 표준에 대한 요구와 계획을 전달하고, 계약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투숙 전 및 투숙 기간 동안, 내용 게시와 건물 정보 책자를 통해 시행 중인 세정 및 안전 조치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고객이 모든 체크인 및 체크아웃 프로토콜과 업데이트된 건물 또는 편의시설 정책(예: 아파트 건물 서비스 변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비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 서비스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임대 시설이 점유되어 있는 동안에는 비필수적인 유지보수를 연기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비상 또는 긴급한 문제만 처리합니다.
- 모든 HVAC/공기 필터가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교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터의 정기적인 교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고여과 효율의 필터를 사용합니다. 사용한 공기 필터의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 최대한 조심해서 제거한 후 폐기합니다.
- 고객이 퇴실한 후 가능하다면 24~72시간 동안 임대 시설을 비워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 컨퍼런스, 회의 등 대규모 모임용 임대 시설은 해당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열면 안 됩니다.



## 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 추가 고려 사항

- 수영장과 스플래시 패드, 온수 욕조, 사우나 및 증기탕이 갖춰진 숙박업체 운영자는 [CDC 지침](#)에 따라 방문자 사용에 대비해 해당 시설을 적절히 세정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방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실외 온수 욕조를 갖춘 시설은 항상 같은 가정에서 온 것이 아닌 온수 욕조 사용자들 간에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한 번에 한 가구 그룹으로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고객은 온수 욕조에 있는 동안 얼굴 가리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얼굴 가리개가 젖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수 욕조 밖에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시설에서는 세탁을 위해 사용한 타월을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고, 접촉이 심한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거리두기 및 얼굴 가리개 요건에 관한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 시설 직원은 거리두기 요건의 준수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온수 욕조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개인 전용 야외 온수 욕조를 이용한 온수 욕조 대여는 한 번에 한 가구 단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 고객은 온수 욕조에 있는 동안 얼굴 가리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얼굴 가리개가 젖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수 욕조 밖에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얼굴 가리개 요건에 관한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 온수 욕조 사용 사이에는, 운영자가 사용한 타월을 수거하여 세탁해야 합니다. 고접촉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실내 수영장의 경우, CDPH 지침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물이나 샤워 구역 밖에서는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마스크)는 젖은 상태에서 숨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얼굴 가리개(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치워 놓아 다른 사람이 실수로 만지거나 집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실외 수영장의 경우, CDPH 지침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물 밖에서는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적절한 소독제 수준(1-10ppm 유리염소 또는 3-8ppm 브로민)과 pH(7.2-8)을 유지해야 합니다.
- 물놀이 시설을 설계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와 상의하여 해당 물놀이 시설에 최적인 [EPA가 승인한 목록 N 소독제](#)를 결정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안전하게 제품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해 소독제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및 보관을 확인합니다.

- 세척과 소독이 필요한 가구 및 장비(예: 라운지 의자)를 이미 세척 및 소독을 완료된 가구와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아직 세척과 소독이 완료되지 않은 사용했던 장비용 컨테이너와 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장비용 컨테이너에 라벨을 붙입니다.
-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타월과 의류를 세탁합니다. 적합한 한도 내에서 가장 따뜻한 물 온도를 사용한 후 해당 품목을 완전히 말립니다. 일회용 장갑으로 최대한 조심해서(흔들면 안 됨) 타월을 취급합니다.
- 물품, 특히 세척과 소독이 어려운 물품이나 얼굴에 접촉하는 물품(예: 고글, 노즈 클립, 스노클 등)의 경우,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가능하면 공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키보드, 풀 누들 및 기타 부양 장치와 같은 고객용 장비를 시설에 충분히 갖추도록 합니다. 사용 후에는 항상 물품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실내 물놀이 시설의 경우 창문과 문을 열거나 선풍기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실외 공기를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고 순환시킵니다. 하지만, 근로자나 방문자 또는 수영 중인 사람에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창문과 문을 열면 안 됩니다.
- 데크 레이아웃과 수영장을 둘러싼 구역을 변경하여 서 있거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라운지 의자를 없애거나 특정 구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막는 것도 포함됩니다.
- 물리적 표시나 가이드(예: 수영장 내 경계선 또는 데크 내 의자나 테이블)와 시각적 표시(예: 데크, 바닥 또는 인도 상의 테이프) 및 표식을 제공해 물 속과 바깥 모두에서 근로자, 방문자 및 수영하는 사람이 서로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지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 근로자와 고객이 상호 교류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가 힘든 곳에 Plexiglas와 같은 불투과성 물리적 장벽을 설치합니다.
-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해 수영장 사용을 위한 예약 시스템을 시행하거나 기타 다른 메커니즘 구현을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개별 왕복 수영을 위해 하나의 레인을 예약할 수 있게 하거나 수영하는 사람들을 레인에 번갈아서 배치하거나 개별 가족 사용을 위해 하프 레인을 예약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명구조 역할을 수행 중인 인명구조원은 손씻기, 천 얼굴 가리개의 사용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모니터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책임은 다른 근로자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 물놀이 시설은 단체 모임을 조장하는 활동을 피해야 하며, 수상 피트니스 강습, 수영 강습, 수영팀 연습, 수영 대회, 수영장 파티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청소년 및 성인 스포츠 및 모임 요건과 관련된 주 및 지역 정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CDC의 [모델 아쿠아틱 건강 코드\(Model Aquatic Health Code\)](#)에는 공영 수영장에서 질병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up>1</sup>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호텔, 숙박 및 단기 임대 산업은 모든 [캘리포니아/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의 표준을 준수하고, 해당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해당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 방식을 변경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